

8.31(화) 조간 (인터넷 8.30(월) 브리핑 이후)



▶ 2010. 8. 30 배포
▶ 총 8쪽(사진 없음)

보 도 자 료

▶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
팀 장 이철우
사무관 이경환
TEL : 02)6902-8231
FAX : 02)503-9731

< 본 자료는 <http://laborstat.moel.go.kr>(최신보도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타임오프제, 10개 기업중 7개가 도입... 순조롭게 정착.

- 제도 도입 사업장의 96.9%가 법을 준수 -

□ 근로시간면제제도(타임오프제) 도입율이 시행 두달만에 70%를 넘어서는 등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고용노동부는 8월 27일 현재 올 8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,446개소 중 1,016개소(70.3%)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잠정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
* 1,016개소중 단협체결 536개소, 잠정합의 480개소

○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984개소(96.9%)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,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2개소(3.1%)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30개소, 한국노총 1개소, 미가입 1개소이다

< 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 사업장 현황 >

지도대상 사업장	(잠정)합의 사업장		
	합 계	한도 준수	한도 초과
1,446*	1,016	984 (96.9%)	32 (3.1%)

* 근로자수 100인이상 유노조 사업장(금속,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) 중 '10년 8월말 이전에 단협 만료되는 사업장

-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.4%로 제일 높고, 한국노총 사업장이 78.4%, 민주노총 사업장이 50.8% 순으로 나타났다.

<상급단체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>

한국노총(783)			민주노총(494)			미가입(169)		
소계	준수	초과	소계	준수	초과	소계	준수	초과
614 (78.4%)	613	1	251 (50.8%)	221	30	151 (89.4%)	150	1

* ()는 대상

- 또한,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2개소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76개소로서, 한도 준수가 46개소(60.5%)로 한도 초과 30개소(39.5%)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민주노총 금속노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현황>

지도대상 사업장	(잠정)합의 사업장		
	합 계	한도 준수	한도 초과
182	76	46 (60.5%)	30 (39.5%)

□ 한편,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(28개소)에 대하여는 자율시정 권고, 노동위원회 의결요청, 단협 시정명령을 하는 등 면제한도를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(붙임2 참조)

▲ 자율시정 권고 중 : 피엘에이, 1개사

▲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중 : 세신버팔로 등 11개사

▲ 단협 시정명령 예정 : 삼원강재 등 16개소 (8.25 경북지노위 '인정' 의결
→ 판정문 송달 즉시 시정명령 예정)

- 또한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자율시정을 지도한 결과 대원강업 등 3개사가 면제한도를 준수하기로 단협을 변경·시정하였다(붙임3 참조)

□ 그리고 8월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, 13개소(단협 시정명령 10개소 포함)가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.

-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소(제철세라믹, 한국수드케미)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, 그 외 1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지시하였다(붙임4 참조)

○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

-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·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,

-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붙임1>

8월중 주요사업장 근로시간면제한도 도입사례

사업장명	조합원수	현전임자수	법정 한도 (사용가능인원)	합의내용
현대삼호중공업	2,507	14	10,000시간 (5명)	10,000시간
LG화학 석유화학부문	2,254	11	“	10,000시간
경기고속	2,238	2	“	2명
대우건설	1,245	5	“	10,000시간(5명)
LG하우시스(주)	1,080	8	“	10,000시간(5명)
수원여객운수	830	3	6,000시간 (3명)	6,000시간(3명)
대원강업	753	12	“	법정 한도 내 (3명)에서 노사협의로 정함
케이티링커스	691	5	“	6,000시간(3명)
대원운수	590	1	“	6,000시간(풀타임 1명, 파트타임 1명)
경남여객	550	1	“	1명
엘에스니꼬동제련	457	3	5,000시간 (2.5명)	5000시 간(풀 타임 2명, 파트타임 1명)
엠이엠씨코리아	408	3	“	5,000시간(풀타임 2명, 파트타임 1명)
리츠칼튼호텔	362	3	“	5000시간(풀타임 2명, 파트타임 1명)
공항리무진	336	1.5	“	법정 한도내에서 정함 (풀타임 1명, 파트타임 1명)

<붙임2>

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사업장 조치현황

□ 자율시정 권고 중

연번	사업장명	법정 한도 (사용가능인원)	현 전임자수	합의내용	상급단체	권고일자
1	피엘에이	3,000시간 (1.5명)	4	전임자 현행유지 (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)	민주노총	8.12

□ 행정관청에서 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요청 중(자율시정 권고에 불응)

연번	사업장명	법정 한도 (사용가능인원)	현 전임자수	합의내용	상급단체	의결요청 일자
1	대 한이연	3,000시간 (1.5명)	4	전임자 현행유지	민주노총	8.23
2	대성엠피씨	2,000시간 (1명)	2	전임자 현행유지 (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)	“	8.27
3	대 한칼소닉	4,000시간 (2명)	4	전임자 3명 (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)	“	8.27
4	세정	4,000시간 (2명)	2	전임자 2명 (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)	“	8.27
5	유성기업	6,000시간 (3명)	5	전임자 현행유지	“	8.27
6	세영테크	2,000시간 (1명)	2.5	전임자 2명 (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)	“	8.27
7	한국분말아금	3,000시간 (1.5명)	3	전임자 1.5명 (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)	“	8.27
8	나스테크	2,000시간 (1명)	2	전임자 1명 (상급단체 피선시 1명 추가)	“	8.27
9	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	5,000시간 (2.5명)	3.5	풀타임 2명, 파트타임 6명	한국노총 공공연맹	9월초 예정 (과천시)
10	동신유압	2,000시간 (1명)	1.5	전임자 현행유지	미가입	9월초 예정 (사상구청)
11	세신버팔로	2,000시간 (1명)	3	전임자 현행유지	민주노총	8.30

□ 행정관청의 단협 시정명령 예정(노동위원회 의결 완료)

연번	사업장명	법정 한도 (사용가능인원)	현 전임자수	합의내용	조치내용
1	제철세라믹	1,000시간 (0.5명)	1	전임자 현행유지	9월초 시정명령 예정 (판정문 송달 즉시) *8.25 경북지노위 인정 의결
2	한국수드캐미	1,000시간 (0.5명)	1	“	“
3	삼원강재	3,000시간 (1.5명)	3	“	“
4	에코플라스틱	5,000시간 (2.5명)	7	“	“
5	일진베어링	4,000시간 (2명)	4	”	“
6	디에스시	4,000시간 (2명)	4	”	“
7	광진상공	3,000시간 (1.5명)	4	”	“
8	이너지오토 모티브	2,000시간 (1명)	2	”	“
9	KCO에너지	2,000시간 (1명)	3	”	“
10	ITW대림	2,000시간 (1명)	2	”	“
11	전진산업	1,000시간 (0.5명)	1	”	“
12	한국펠저	1,000시간 (0.5명)	1	”	“
13	인지콘트롤스 경주	2,000시간 (1명)	2	”	“
14	청우	1,000시간 (0.5명)	1	”	“
15	오리엔스	2,000시간 (1명)	3	”	“
16	넥스텍	1,000시간 (0.5명)	0.5	1명	“

<붙임3>

면제한도 초과에서 준수로 시정완료 사업장

사업장명	조합원 수	상급 단체	현 전임자 수	법정한도 (사용가능 인원)	변 경 내 용	
					변 경 전	변 경 후
대원강업	735	민주 노총	12명	6,000시간 (3명)	전임자 12명	8.13 단협 체결 * 법정 한도(3명) 범위내 노사협의
대동병원	104	민주 노총	2	3,000시간 (1.5명)	전임자 2명	8.26 단협 체결 * 3,000시간(1.5명)
삼익교통	27	미가 입	2	1,000시간 (0.5명)	1,000시간 (파트타임 8명)	8.24 단협체결 * 1,000시간(파트 타임 3명)

<붙임4>

현장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

연번	사업장명	법정 한도 (사용가능인원)	현 전 임 자 수	위반내용	조치내 용
1	제철세라믹	1,000시간 (0.5명)	1	전임자 급여지급 및 운영비 원조	시정명령(8.25까지)에 불응하여 사법처리 예정
2	한국수드캐미	1,000시간 (0.5명)	1	“	“
3	삼원강재	3,000시간 (1.5명)	3	“	8.13 시정명령→ 불응시 사법처리
4	디에스시	4,000시간 (2명)	4	“	8.15 시정명령→ 불응시 사법처리
5	일진베어링	3,000시간 (2명)	4	“	8.17 시정명령→ 불응시 사법처리
6	넥스텍	1,000시간 (0.5명)	0.5	“	8.20 시정명령→ 불응시 사법처리
7	에코플라스틱	5,000시간 (2.5명)	7	“	8.26 시정명령→ 불응시 사법처리
8	대동산업	1,000시간 (0.5명)	0.5	“	8.27 시정명령→ 불응시 사법처리
9	오리엔스	2,000시간 (1명)	3	“	8.26 시정명령→ 불응시 사법처리
10	한국거래소	6,000시간 (3명)	9	운영비 원조	8.26 시정명령→ 불응시 사법처리
11	이너지오토모 티브시스템즈	2,000시간 (1명)	2	운영비 원조	8.27 시정명령→ 불응시 사법처리
12	다스	6,000시간 (3명)	12	교섭위원 상여금 지급	8.30 시정명령→ 불응시 사법처리
13	이원정공	1,500시간 (1.5명)	2.5	전임자 급여지급	“